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 요건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에 대한 소고

정 오 균*

- | |
|---|
| <p>I. 서론</p> <p>II. 중과실의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 2.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검토 3. 법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의 요건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의 검토 4. 중과실 판단기준 5.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기인한’ 때(인과관계) <p>III.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선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법상 해석상의 문제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의 ‘중대한 과실’ 삭제 <p>IV. 결론</p> |
|---|

I. 서론

헌법상 보장된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보험수급권은 국가에

* 논문접수: 2012.5.2. * 심사개시: 2012.5.10. * 수정일: 2012.6.7. * 게재확정: 2012.6.8.

* 법무법인 대원 변호사, 법학석사

* 이 논문은 무보험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 자기신체상해의 경우를 전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급여제한’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며, 위 규정 중 ‘범죄행위’는 행정법규위반의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중과실’과 ‘기인하여’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의료보험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수급권자의 범위·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고 대표적인 법률이 국민건강보험법¹⁾ 된다.²⁾

위 법은 전 국민이 질병이 걸렸을 때 금전적인 이유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받지 못한 경우를 없애고 최소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하는 전 국민의 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³⁾

특히 오늘날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급여제한’의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범죄행위와 이에 기인한 보험사고’ 간의 관계와 해석 및 중과실 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 1-1> 교통사고 중과실 보험급여제한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급여제한건수	급여제한건수	급여제한건수
30,296	30,443	37,170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관리실 급여조사 3파트 자료제공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참고한 일본 국민건강보험법의 같은 제한 규정에서는 ‘자기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제한을 하고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⁵⁾ 본 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국민건강보험급여제한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1) 이 논문에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을 지칭한다.

2) 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바1, 『판례집』, 제15권 2집, 하, 제441면, 헌법재판소 1999. 4. 29. 97헌마333, 『판례집』, 11-1, 제503, 513면 참조.

3) 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대상 참조.

4) 정흥기 외, 『국민건강보험법』, 제3판, 한국법제연구원, 2005. 제446면.

5) 일본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는 피보험자가 자기의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또는 고의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부상한 때에는 당해 질병 또는 부상에 관한 요양의 급부 등은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규정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자동차운전 중 사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보험의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중과실’ 부분에 대한 해석과 개선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II. 중과실의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

1.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

가. 보험급여제한

(1)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가) 건강보험 급여제한의 의미

보험급여의 제한은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물급여의 거부는 국민이 건강보험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표 2-1> 법상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규정의 연혁

년도	법률명	제한사유	
1963.12.16.	의료보험법	고의, 과실 제한규정 없음	시행 안 됨
1979.12.28.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자신의 고의의 범죄행위	
1984.12.31.	의료보험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자신의 범죄행위(고의, 중과실, 경과실 포함)	89년, 국민 91% 가입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통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	전 국민
1999.2.8.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 통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	전 국민

6) 위 논문에서 다루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11대 운전위반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다루고 있으며, 위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판례의 예에 따라서 위 운전 중 위반행위가 과실임을 전제로 작성하기로 합니다.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나) 보험급여제한의 성격

사회보장법에서 급여의 제한은 가입자가 보험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의 경우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가입자가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스스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보다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종종 사회적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하는 상황 자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위험을 스스로 야기하는 상태가 비난가능하지 않거나, 혹은 사회적 환경의 산물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⁸⁾ 국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보험급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단에서 급여제한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위 거부의 의사표시는 처분성을 갖고, 위 급여제한 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⁹⁾

(2) 자동차보험의 급여제한

(가) 자동차종합보험표준약관

동 면책약관¹⁰⁾은 제14장 보상하지 아니한 사항에서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범죄를

7) 정흥기 외, 전게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51면.

8)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제8판, 법문사, 2010. 제266~267면.

9)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령 해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2011. 제538면.

10) 여기에서 인용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은 2011. 5. 8부터 시행되는 약관으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이며,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표준약관을 말한다.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 ④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0. 4. 개정된 현행 약관에서 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¹¹⁾ 면책조항은 인보험적 성격을 고려하여 삭제되었다.¹²⁾ 따라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한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등 소위 11대 중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었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분 등의 특례를 정하면서 동법 제3조 제2항에서 11개 항목을 두고 소위 '11대 중과실'¹³⁾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이 중과실로 인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까지 기소를 못하게 한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인 재판상진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위헌결정을 받으면서 중과실에 의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당연히 공소제기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¹⁴⁾

11) 현행 자동차종합보험 표준약관은, 제14편에서 보험회사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으로 대인배상 II에 있어서 “피보험자 보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음주운전은 면책사유에서 제외하고, 일정한 자기부담금은 부담한 경우에 급여의 대상으로 삼는 일부 보험금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면책조항은 무면허 면책조항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그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I·II: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 또는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 사고당 대인배상 I: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 규정하여 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실상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제785면.

13)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의 중요사항으로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킬로미터 초과, ④ 무면허운전, ⑤ 음주운전 등 11가지의 중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형사상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3) 법상 보험급여제한의 효력

(가) 원칙적 사전급여제한

건강보험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즉, 국민이 질병·부상 등을 입었을 때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급여이다. 그런데 현물급여에 대한 급여제한은 성질상 요양기관에서 진료개시일부터 건강보험으로 받지 못하는 사전급여제한으로 법상 제한도 사전급여제한이다.¹⁵⁾

(나) 급여제한의 절대성, 의무성

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절대적 제한(법 제48조 제1항, 제2항)과 공단의 재량의 여지가 있는 상대적 제한(법 제48조 제3항, 제4항)이 있으며, 위 법제48조 제1항 대상규정은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은 절대적 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¹⁶⁾ 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제한의 불가분성

급여제한의 범위가 당해 질병·부상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법 제48조 제1항, 제2항)와 일정기간 동안의 모든 질병·부상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법 제48조 제3항, 제4항)가 있으나, 그 제한은 전부제한이지 그 중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분할이 불가능한 불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14)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 결정,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조건 면책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다.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게서, 제538면.

16)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게서, 제539면.

2.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검토

가. 법 제48조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의 요건의 '중과실'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 규정은 1984년 법 개정시 '고의'가 삭제되면서 고의·과실에 의한 모든 범죄행위가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해석될 수 있었다. 이에 위 규정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에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 이외에 경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료보험수급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고 한정위헌결정을 하였고,¹⁷⁾ 1999. 2. 8. 통합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중과실' 급여제한의 취지

(1) 중과실의 개념과 판단의 어려움

과실의 개념은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규정하고(형법 제14조),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를 하

17) 헌법재판소 2003.12.18, 2002헌바1, 『판례집』, 제15권 2집, 하, 제441면[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소원 청구인은 1999. 11. 6. 23:35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청구 외 박준규 운전의 택시와 충돌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도 경추골절로 인한 하반신불구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에게 위 부상에 대한 보험금 8,001,170원을 지급하였다가 청구인의 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5. 4. 청구인으로 부터 위 보험금 상당액을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자, 자신의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송을 낸 사안에서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는 개념상 우연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¹⁸⁾ 주의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¹⁹⁾ 이러한 중대한 과실은 경과실과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고의에 준함이 상당한 것만을 가리키는 경우와, 양적으로 경과실보다 무거운 것을 널리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급여제한 사유로서 규정된 중대한 과실은 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과실에 대한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회상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중과실을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형사상특례를 규정한 소위 ‘11대 중과실’을 중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과실 규정이 인과관계의 해석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2) 급여제한의 중과실 요건의 취지

법에서 급여제한 사유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급여의 제한은 ① 징벌적·보험 정책적 의미에서, ②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없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는데,²¹⁾ ‘중과실’의 경우도 과실이기 때문에 사고자체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할 때 ②에 해당하지 않고, ①만이

1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716 판결.

19)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20) 김광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대법원 판례해설』, 제45호, 법원도서관, 제146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험 법령·판례 해설』, 제325면.

21)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절대적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 보험정책적인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는 행위는 우연성의 결의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해당될 뿐이며, 헌법상 보호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보험의 본질 상 ① 징벌적·보험정책적인 제한을 인정하되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²²⁾

3. 법제48조 제1항 제1호 보험급여 제한의 요건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의 검토

가. 판례의 해석

(1) 관련 판례

(가) 전방시야가 불량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차선을 횡단한 다음 반대차선의 가장자리를 따라 역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그 사고경위인 소외 1이 전방시야가 불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자신의 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여 오는 위 망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안전하게 피행하지 못한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추어 위 보험급여제한 사유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²³⁾

(나)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한남대교에서 펑크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3대의 차량과 충돌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여 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나중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그 동안 지급한 치료비를 반환하라는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음주운전 중 타이어펑크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이 그 직접적인

22) 김광태, 전제논문,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제141~148면.

23)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36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2. 29. 선고 2005구합26793.

원인이므로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²⁴⁾

(다) 공무원이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이 2년 이상 사고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상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장애 발생시급여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들어 급여제한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이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과 같은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다른 과실들과는 달리 그 무면허 사유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 할 정도로 운전능력이 미숙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무면허운전이라는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중과실로 볼 수 없다.”²⁵⁾고 판시하였고,

(라)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선 도로의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 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²⁶⁾

24) 서울행정법원 2011. 11. 3. 선고 2011구합2029.

25) 서울고등법원 2010누40238.

26)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나. 검토

위 판례 중 (가)(나)(다)판례는 운전자의 과실이 보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침범 그 자체를 바로 중과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경우 중과실을 부정하여 해석을 통해 '중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위 규정을 제한해석하고 있고, 한편 (라)판례는 중앙선침범사고이나 제3의 요소가 개입된 경우를 오로지 또는 주된 보험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인하여'의 인과관계를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중앙선침범 자체의 과실을 중과실로 본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법상 보험급여제한 사유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보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 즉, 행정법규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법규위반에 기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켜야 급여가 제한이 되는 구조임에도 다른 요소가 개입된 경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인과관계를 제한 해석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일정하지 않다.

4. 중과실 판단기준

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소위 '11대 중과실'과 관계

(1) 특례법규정의 중과실이 급여제한 기준성 여부

(가) 헌법재판소는 보험가입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으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자, 위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특례법 제4조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형사상 특례를 규정한 법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입법자가 사법부에게 판례를 통한 중과실 개념의 구체화를 위임할 수도 있으나, 법적 안정성, 법의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이란 취지에서 입법자가 도로교통에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

중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현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과실인 동시에 그 판별이 상식적으로 비교적 용이한 전형적인 행위를 11가지 유형으로 직접 구체화하였다. 비록 이 단서에 포함된 11가지 유형이 생각할 수 있는 중과실의 경우를 빠짐없이 유형화하지는 못하였으나 중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요건화한 것이다'고 결정하였다.²⁷⁾

(나) 공단은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형사상특례를 제외규정인 소위 '11대 중과실' 규정을 중과실을 판단하고 있고, 법원은 위 입법목적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면허 운전 중 사고,²⁸⁾ 음주운전 중 사고,²⁹⁾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자기신체피해자³⁰⁾에 대하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11대 항목을 위반하여 자기신체피해자에 대하여 그 자체의 위반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지 않고, 급여제한 사유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다) 법원의 위 제한규정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방법 위반 등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형사상특례를 제외하고 있는 위반행위는 운전자가 자신이 무면허상태, 음주상태, 신호의 상태, 중앙선을 넘고 있다는 것은 운전자가 그 자체 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인식을 하고 용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범죄행위 자체인 무면허운전 등은 거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로 인한 보험사고는 과실로

27) 헌법재판소 1997.1.16. 결정, 90헌마110.136, 위 결정당시 항목은 8개 항목이었으나 현재 추가된 상태이다.

28) 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0238 판결.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984. 6. 26. 선고 84가단1117.

30) 대법원 1990. 2. 9. 89누2295 판결.

3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게서, 제549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가 하면,³²⁾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무면허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고의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하여 대부분 과실(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고,³³⁾ 건강보험급여의 제한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³⁴⁾

(2) 검토

특례법의 입법목적은 법은 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 처분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양자의 입법 목적이 다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경우 입법자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사 처분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의 차별의 범죄의 유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형사 처분의 특례의 인정기준을 판단함에 따른 설명을 하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법의 목적이 전혀 다른 보험급여제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교통사고를 신속하고 통일적인 적용, 범죄인의 균등한 처벌이란 취지에서 도로교통에서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정한 기준을 이와 전혀 다른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한의 기준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법원의 위 중과실에 대한 해석은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가 대부

3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33) 명순구 외, 전게서, 제647면.

34) 명순구 외, 전게서, 제647면; 서울행정법원 2005. 12. 29. 선고 2005구합26793 판결.

분이 고의범죄행위이고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가 과실임에도 전체적으로 음주 및 무면허 등의 위반으로 인한 범죄행위와 보험사고를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과실범으로 보고 중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범죄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보험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구분하여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나.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과실’ 규정과의 관계

(1) 규정 체계

공무원연금법³⁵⁾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제62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중과실에 의한 질병·부상·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제한 사유를 들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2분의1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중과실 적용)에 법 제62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고 있다.³⁶⁾

35)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6)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에 중과실에 적용하는 경우를 공무원연금법 제62조제3항 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①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0.01.01, 규칙 제0125호).

(2) 문제점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취지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위 법에서 특례법의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11대 항목을 위반한 경우³⁷⁾ 중과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의 경우 중과실로 되어 공무원연금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판례도 위 공무원연금법의 시행규칙 제15조 제1호의 중과실 의제규정은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의 해석에 위배되고,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이 규정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³⁸⁾ 그러한 입장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³⁹⁾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⁴⁰⁾ 형식적 규정상 중과실요건에 해당함에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중과실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중과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4) 검토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도 건강보험은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37) 위 법은 제3조 제2항 단서 11호가 2007.12.2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면서 11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가 추가되었다. 위 법은 개정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게 되었다.

38) 서울행정법원 2001. 12. 13. 선고 2001구8352 판결.

39) 서울고등법원 1986. 4. 26. 선고 85다4196 판결.

40)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서울행정법원 2010. 22. 선고 2010구합16318 판결.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과 다르고, 성격도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인 반면, 공무원연금법은 사회보험의 성격과 재해보상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⁴¹⁾ 보장대상이나 급여의 범위 등에서 달라 유추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

다.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의 공단의 실무상 적용

(1) 교통사고 자손환자 ‘중과실’ 급여제한 처리 절차

외형상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공단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자신이 다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진료를 신청하면 병원에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서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의뢰하고 공단에서는 조사 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시속 20 km 초과속도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의한 위반사항(11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그 운전자의 상해가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확인이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병원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실무상 중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자료

특히 교통사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할검찰청의 약식기소명령,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이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⁴²⁾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공단이 급여를 제한하는 근거에 불과하고, 기타 보험사고 당사자가 인정하는 등의 명백히 밝혀지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⁴³⁾

41)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는 단기급여와 장기급여가 있으며, 단기급여는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보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있고,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있다.

42)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계서, 제549면.

라. 소결론

교통사고 운전자의 중과실에 대한 판단은 다른 법규에 비록 중과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건강권을 규정하고 있는 법에 적용할 경우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재산권 등의 침해가 우려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보험급여의 제한 규정에 법에 적용할 수는 없고, 중과실은 그 특별한 적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기인한' 때(인과관계)

가. 의의

여기에서 '기인한'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와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고로 질병, 부상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상당인과관계 외 더 추가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①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행위가 보험사고와 상당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이러한 인과관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나. 보험급여제한 사유의 '기인한'의 해석

(1) 제1요건-직접적인 인과관계의 존재

위 법이 급여제한 사유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기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절대적 급여제한 사유로 하고 있고, 사전적인 급여제한 사유로 하고 있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와 보험사고 사이에는 국민의 의료

4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계서, 제554면; 명순구 외, 전계서, 제642면; 대전고등법원 1994. 6. 17. 선고 93구2405판결.

보장을 위하여 상당인과관계보다 더 고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 다른 차량에 의하여 추돌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음주나 무면허로 인한 운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범죄에 해당하지만 위 범죄와 보험사고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고 본다.⁴⁴⁾

고등법원판례도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군용트럭이 뒤에서 받아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상은 직접적으로는 군용트럭 운전자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피고의 무면허 운전행위 자체가 위 부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⁵⁾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전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자 하는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단순한 상당인과관계를 넘어 보다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2) 제2요건-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보험사고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

급여제한은 국민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겠다는 제도로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사회적 연대책임이 적용되는 보험이고 자기책임원칙에 의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보험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과실이나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 그 비난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보험사고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야 제한

44) 명순구 외, 전거서, 제555~556면.

45) 서울고등법원, 85나4196, 사고당시 구 의료보험법은 고의의 범죄행위만 보험급여제한의 대상이었고, 대법원에서 위 원심은 86다카1320로 확정되었다.

이 가능하다고 본다.⁴⁶⁾

대법원은 '중과실'이 규정되기 전인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자신의 범죄행위로 기인한'으로 보험급여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고 보험가입자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2차선을 운전하던 중 도로 맞은편에서 번호 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소정의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그 부상은 오로지 또는 주로 보험가입자 자신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항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⁴⁷⁾고 판시함으로써 보험사고의 주된 원인을 판단하여 보험급여제한 사유로 삼았다.

최근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의 해석이라고 보인다.⁴⁸⁾

46) 명순구 외, 전제서, 제556면.

47) 대법원 1990.2.9. 선고 89누2295 판결.

48)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

III. ‘중과실’ 자손환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선방안

1. 현행법상 해석상의 문제

현행 본 논문의 건강보험급여제한 규정인 법제48조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형법과 특별법령에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만을 해석하고, ‘~기인하여’ 보험사고를 발생한 때는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킨 때로 엄격제한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와 ‘기인하여’의 해석의 구별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최소한 국민이 질병, 부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보장을 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국민이 어떠한 사유에 의하건 국민의 질병과 부상 당시에는 건강보험의 급여를 보장받아야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고 유형, 국가의 재정적인 이유,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이유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급여를 제한사유로 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판단에 어려움이 없어 의견이 일치해 보인다.

나. 입증책임의 완화

현행법 하에서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제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공단은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

위'에 대한 입증으로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교통사고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서류) 등에 '중앙선침범' 등 소위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급여제한처분을 하게 되어 이러한 사유는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되고 제한도 그만큼 쉬울 수 있다.

그런데 '중앙선 침범' 등 외형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소위 특례법상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이러한 행정법규위반의 범죄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맞은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왔고, 갑자기 동물이 도로에 나타나서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보험사고운전자에 있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가항력적인 주장은 운전자의 부상이 심할수록 사전에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운전자는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공단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소위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의 행정법규위반의 범죄행위가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해서 위 오로지 또는 주된 원인에 대한 입증은 공단이 함에 있어서 제 3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서 급여를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다. 선 보험급여 후 급여제한 요건 판단

보험급여제한 사유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보험자인 공단이 문서로서 가입자, 피부양자, 요양기관에 하는 것이며, 임의로 요양기관에서 비록 급여제한 상병이 의심된다고 할지라도 보험급여(요양급여)로 처리하여야 하고,⁴⁹⁾ 급여제한 사유가 나중에 밝혀질 경우 급여를 환

49) 정홍기 외, 전계서, 제436면.

수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자동차사고든 산재사고든 진료비는 모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처리하며, 향후 각 보험자 간의 정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본받을 만하다.

라.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의 급여제한 및 부당 이득환수에 대한 사전 고지

법에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의 경우 환수하는 규정이 있으나 치료가 종결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보험급여의 부당이득환수 처분을 하게 되면 신뢰 보호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치료 당시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현행법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를 중과실에 의한 급여제한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치료당시 급여제한 사유인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급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항의와 치료의 기회부여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급여 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보험사고 사후에 밝혀진 경우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인 사전통지제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⁵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는 공단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50) 법제 제21조에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만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기에 치료를 받기 시작 단계라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2.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의 '중대한 과실' 삭제

국민에게 발생한 질병과 부상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법 제48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가. 국민의 부상·질병의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의 기준으로 외형상 무면허운전 등 소위 11대 중과실의 교통사고 자손환자의 경우 처음부터 사전적, 절대적, 의무적인 보험급여를 제한되어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의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나. 고의범으로 평가와 비난가능성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주취상태에서 시동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차량을 훔쳐 무단운행을 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절취와 무면허,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⁵¹⁾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도 도로교통법규의 위반의 경우 대부분이 법규위반 사실은 고의로 이루어진 경우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의 전형적인 경우가 안전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과실로 비난가능성이 낮아 비록 안전주의의무 위반이 주된 보험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중과실 부분을 삭

51)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4997 판결.

제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등 교통사고운전자의 경우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공단의 선택재량권 부재

현재의 법률해석으로는 절대적 제한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에 보험급여 제한여부 및 범위에 관한 재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법상 보험의 원칙 규정과 조화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732조의2에서는 생명보험과 상해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다른 범죄와 형평성문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의 건강보험 제한 사유에서 교통사고로 보험사고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다른 중과실에 의한 범죄에 기인한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의 원리인 우연성이 존재하고, 비난가능성이 고의범에 비해 낮은 부분이 있고, 더욱이 위의 형법 규정을 제외하고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다른 범죄에 있어서 고의와 과실범을 구별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분이 있다. 사안 중에 많은 부분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쌍방폭행을 한 싸움의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싸움은 상호공격에 의한 고의의 범죄로 폭행이라는 고의의 범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보험사고를 유발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되기 때문에 중과실의 삭제로 인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본다. 하급심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²⁾

예외로 작은 실수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경우가 문제인데, 판례 중에는 실화의 경우에 중실화를 인정한 판례가 있으나,⁵³⁾ 이는 형법상 죄를 묻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비록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유로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과실범일 가능성이 많으나 이에 대하여도 미필적인 고의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과실에 해당할 경우 급여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공단의 중과실 판단은 거의 교통사고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우연한 부상·질병에 대하여 국가 최소한의 치료를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과 법의 취지에 비추어 중대한 과실부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바. 권리구제의 어려움

일단 공단이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하지 않게 되면 공단의 급여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공단에 이의신청(법 제76조), 보건복지부에 심판청구(법 제77조), 행정소송으로 거부처분취소를 통하여 취소될 경우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상과 질병에 대한 치료의 기회 박탈은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소송의 시간적·경제적인 지연과 비용 때문에 가사 이러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았다

52) 서울행정법원 2008. 7. 16. 선고 2008구합8826판결(확정)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는 입장서 방어를 위해 상대방을 때린 사안에서 '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고, 2009. 11. 19. 선고 2009구합29837판결에서는 원고가 먼저 때렸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많이 당한 사안에서, '원고가 먼저 상대방을 때리면서 시작된 싸움으로 원고가 주로 이를 유발하였다고 보이는바, 이는 상호폭행이라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53) 대법원 1993.7.27. 선고 93도135 판결,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국민이 권리구제의 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치료의 기회를 잃어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IV. 결 론

법 제48조 제1항의 중과실에 의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 스스로 야기한 사회적 위험이 사회보장청구권의 성립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에 청구권자 스스로의 책임이 인정되어 급여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라 할 수 있다.⁵⁴⁾

사회보장도 각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재정적인 문제로 다른 외국과 다른 면에서 발전을 하였고,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책적으로 ‘중과실의 책임 발생원인’을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의 급여제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전 국민의 헌법과 사회보장법상의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취지에 반하여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급여제한의 중과실 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 제1호)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의 해석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는 형법과 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중과실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형벌법규의 성문법과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고,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가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취지나 보험법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공단은 사고가 제3의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54) 감 신, 『건강보험제도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의무화 하고, 법원의 판결 등에 준한 명확한 결론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범죄행위가 주된 작용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만 급여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결국은 입법적으로 '중과실'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인과관계부분을 고의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보호와 실무상 판단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주제어 :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중과실, 자동차보험, 기인한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강공언·남연희·박경렬·박재원·박영희·오향숙·유진영, 『뉴건강보험공단』, 메디시언, 2010.

김유성, 『사회보장법론』, 법문사, 1999.

명순구·박지순·김명숙·이희정·김나경,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1.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1.

박세민,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이흥재, 『사회보장관계연구』, 초판, 법문사, 2010.

정홍기·조정찬, 『국민건강보험법』, 제3판, 한국법제연구원, 2005.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초판, 2011.

대한의사협회보험국(편), 『국민건강보험 법령·판례 해설』, 초판, 2009.

사법연수원, 『보험법연구』,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0.

2. 국내문헌

감 신, “건강보험제도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시민건강증진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고수경·송기민·박다진, “국내외 사회보장 권리구제 제도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

권순형,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례해설』, 제84호, 법원도서관, 2010.

김광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45호, 2004.

박다진·고수경·송기민, “건강보험·자동차보험·산재보험 제도의 국내외 비교: 의료비 심사일원화 논의에서의 함의”, 『서울대학교 보건학논집』, 제43권 제2호, 통권 제61호, 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 산재)』, 한국사법행정학회, 2005.

소건영, “건강보험법의 급여제한에 관한 고찰”, 『법조』, 2010. 2.

About Insurance Benefits Restriction Condi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en He has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h Kyun Jung

law firm Dea Won

=ABSTRACT=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has been enforced all over the People as part of the effort to assure the minimum constitutional human worth and dignity in the aspect of the right to pursue health for preventing misfortune that comes to death without even a chance to be received treatment for illness or injury.

Meanwhile auto insurance is compulsory in certain parts in order to promote benefits of everyday life and the rapid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raffic accident when one have negligently driven a car which has become the necessities in daily life. Any injured driver in a traffic accident can be treat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out getting an auto insurance in various circumstances, but Article 3 paragraph 2 of Traffic Accident Act don't allow exception of criminal punishment when he has driven a car without license, drunken, or trespassing the centerline, etc.

When the injury occurred by his own certain negligence is judged to 'when he has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caused a criminal conduct or intentionally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insurance benefits can be restricted. Such a restriction could har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health of People by depriving the poor, who cannot afford to pay, of chances to get treatment.

Here we will see benefit restriction by 'gross negligenc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48 paragraph 1, which has largest portion of such

restriction. It is desirable to delete 'gross negligence' clause from above paragraph and to interpret 'when' clause restrictively for diminishing confusion of interpreting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health.

Keyword : National Health Insurance, Insurance benefits restriction,
Gross negligence, Self-inflicted injury, Causation.